



12023010412506000031100

통보서

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

h-well
국민건강보험

[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률 기준]

구분		일반대상	감경률 60%	감경률 40%
본인 부담률	재가급여	15%	6%	9%
	시설급여	20%	8%	12%

[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]

가입자 수	지역 산정보험료액	
	감경률 60%	감경률 40%
1명	19,500원 이하	
2명	19,500원 이하	19,500원 초과 - 94,430원 이하
3명	28,770원 이하	28,770원 초과 - 103,200원 이하
4명	40,540원 이하	40,540원 초과 - 112,920원 이하
5명	43,390원 이하	43,390원 초과 - 116,020원 이하
6명 이상	52,130원 이하	52,130원 초과 - 139,180원 이하

[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]

가입자 수	직장 산정보험료액		재산과표액
	감경률 60%	감경률 40%	
1명	66,980원 이하	66,980원 초과 - 87,370원 이하	122,000,000원 이하
2명	71,420원 이하	71,420원 초과 - 105,580원 이하	207,000,000원 이하
3명	83,700원 이하	83,700원 초과 - 132,280원 이하	268,000,000원 이하
4명	97,830원 이하	97,830원 초과 - 159,920원 이하	329,000,000원 이하
5명	122,320원 이하	122,320원 초과 - 186,780원 이하	389,000,000원 이하
6명 이상	142,710원 이하	142,710원 초과 - 205,770원 이하	450,000,000원 이하

기타 안내 및
유의사항

- ※ 월별 보험료액은 부과보험료액이 아닌 산정보험료액이며,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.
- ※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됩니다.
- ※ 직장 산정보험료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(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)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.
- ※ 재산과표액은 「지방세법」 제105조에 따른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,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※ 보험료 변동 등으로 감경적용을 신청한 자는 해당년월의 감경적용기준에 따라 감경여부를 결정합니다.
- ※ 감경적용기준은 「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 제2조제4항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.(기준적용시기: 2월 ~ 다음년도 1월)
- ※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「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한됩니다.